

| | | | |
|---|--|--|---|
|  | 보 도 자 료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0. 9. 22.(화) 총 3매(본문3) | |
| 담당 부서 주택건설 공급과 | 담당 자 | • 과장 김경현, 사무관 박종용·최예명, 주무관 김유석 • ☎ (044) 201-3372, 3374, 3375 | |
| 보 도 일 시 | 2020년 9월 2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3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안 입법예고 … 신고 절차 등 개선 -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, 자격증 대여·알선 금지, 과징금 규정 등 정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,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,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*(20.9.24.~11. 2.) 한다고 밝혔다.

*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

○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(법제처),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효율화(국무조정실), 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(국민권익위원회)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,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

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.

-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,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.

<신고대상 주요 업무>

| 신고대상 업무 | 처리기간 | 신고자 | 수리기관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관리방법의 결정·변경결정 신고 | 7일 이내 |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| 시·군·구 |
| 관리규약의 제정·개정 신고 | 7일 이내 |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| |
| 입주자대표회의 구성·변경 신고 | 7일 이내 |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| |
|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 신고 | 10일 이내 | 관리인,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| |

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'알선행위' 금지

-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,
 -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*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* 국민권익위원회 「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행위 제재 강화」 권고·의결('18.12)

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

- 지난 '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,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*하게 된다.

* 「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」 (국무조정실, '20.7.)

- 개정안은 '20.9.23.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'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'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·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※ 제출기간 : '20. 9. 24. ~ 11. 2.(40일간)

제 출 처 : ☎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☎ 044-201-3372, 3374, 3375, fax 044-201-5684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종용 사무관(☎ 044-201-33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